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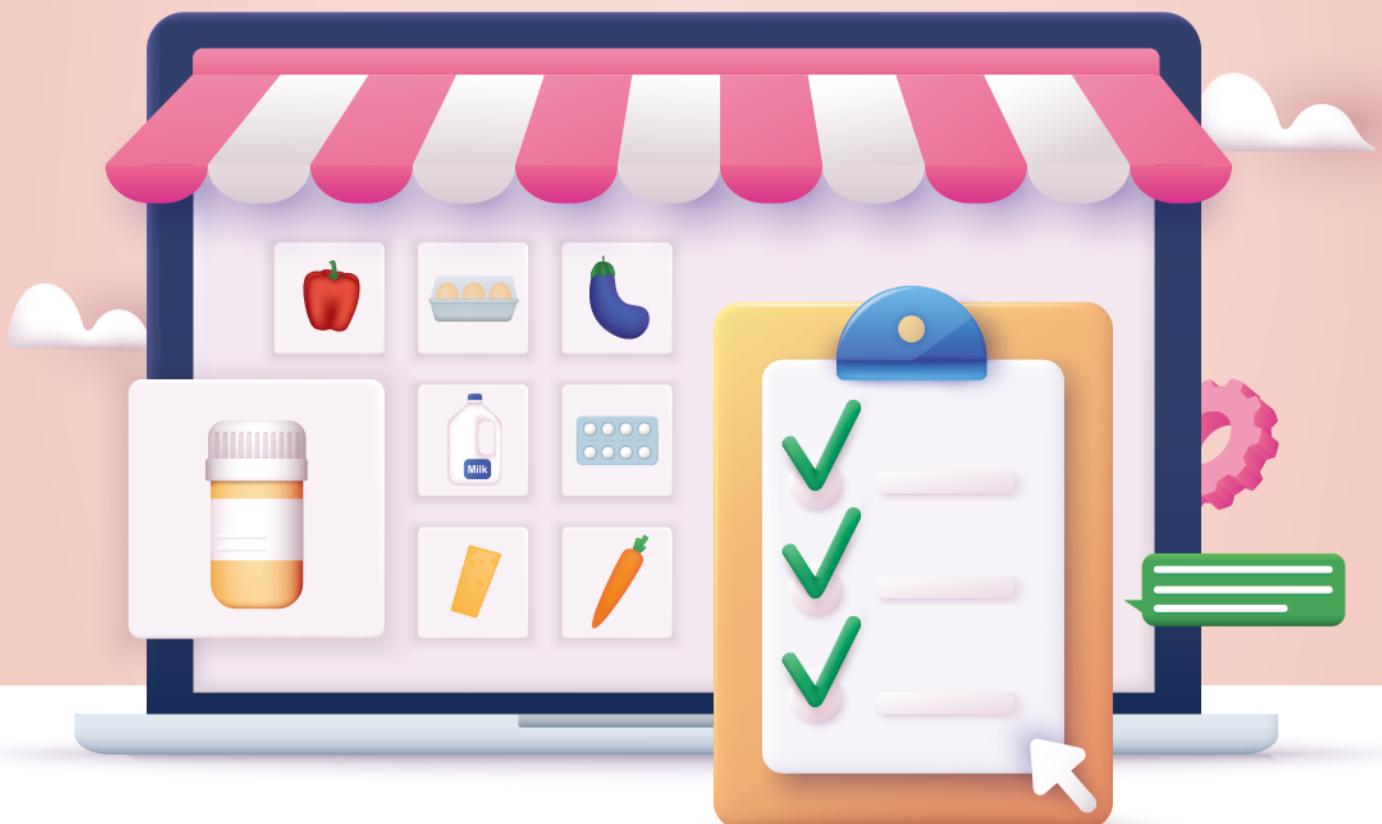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온라인 판매금지 및 부당광고 관련
자율적 준수 사항과 역할 규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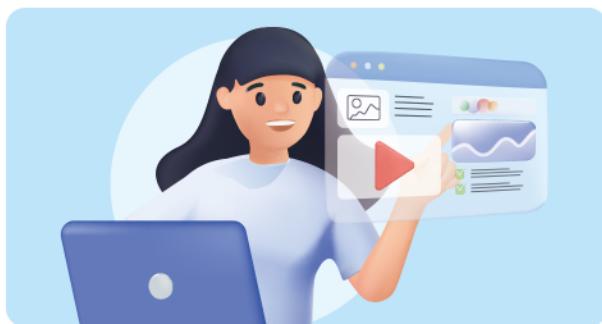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KOLSA
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본 교육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수강 대상



- 식약처 소관 제품 온라인 판매업자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
- 식약처 소관 제품 생산 및 납품 사업자

- ✓ 알쏭달쏭 **온라인 판매금지** 및 **부당광고 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 ✓ 방대한 관련 **법률**을 **주제별**로 모아 **한번에 체크** 가능하며
- ✓ 품목별 **부당광고**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문서로 배포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및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해설판」의 방대한 내용을
온라인 수강으로 **빠르고 편하게 습득**하세요!



수강 기간

자율 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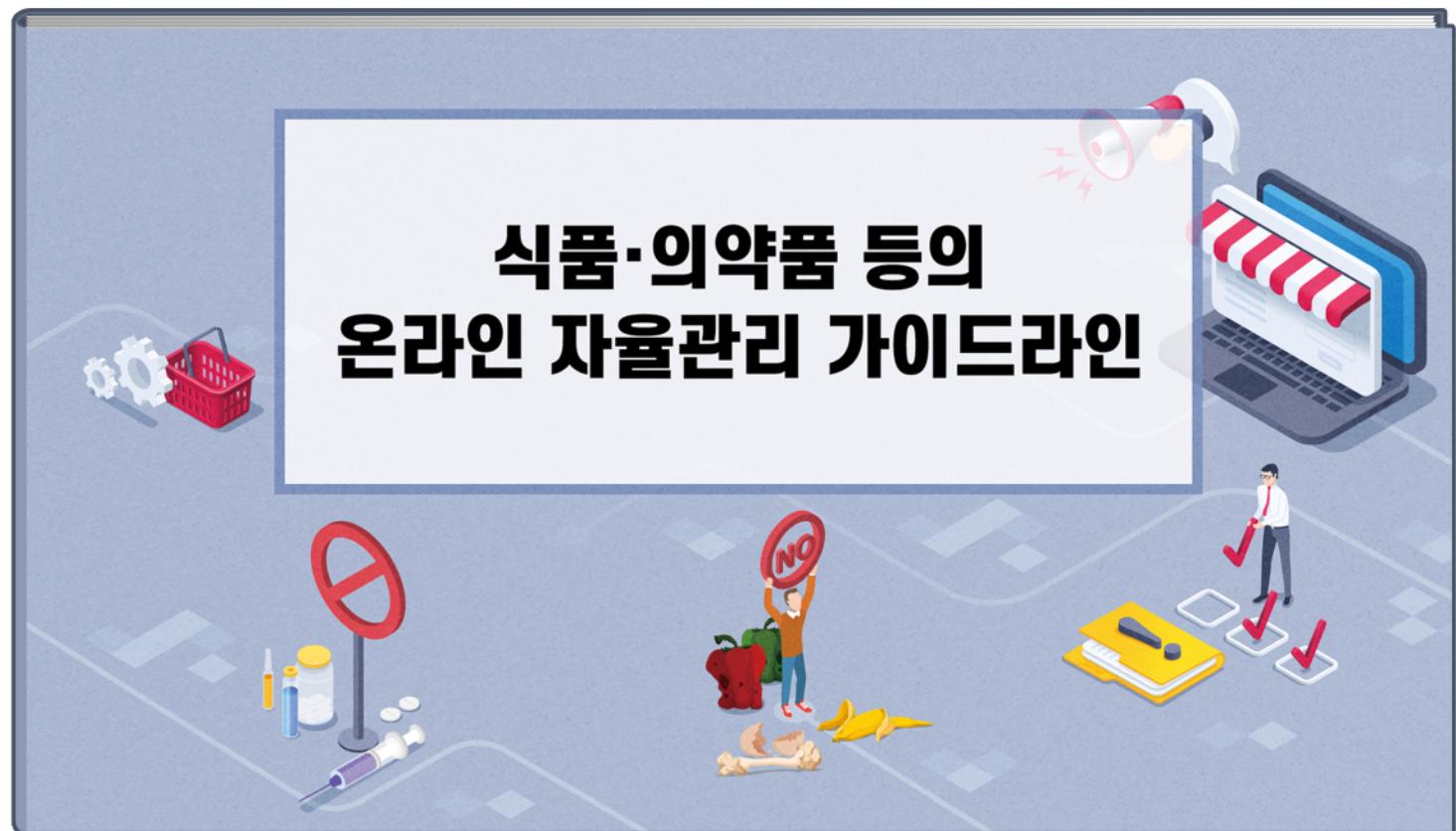
수 강 료

무료



수강 방법

- ① <http://kolsa.sdulife.com>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② [식약처]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 수강신청
- ③ 나의강의실 입장 후 수강 진행
- ④ 수강완료 후 이수증 출력 가능



과정 목차

1차시 가이드라인의 개요 및 판매금지 식품·의약품 등

2차시 판매업자·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3차시 식품·의약품 등의 정보 등록 및 일반적 부당광고 금지

4차시 품목별 부당광고 I (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5차시 품목별 부당광고 II (화장품 및 의약외품)

6차시 품목별 부당광고 III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1차시 가이드라인의 개요 및 판매금지 식품·의약품 등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적용대상자

주제

- ◆ 가이드라인 내용
- ◆ 가이드라인 목적
- ◆ 적용대상자

내용

- 식품·의약품 등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사항 및 역할을 규정
-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안내



2 판매업자의 의무 및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주제

- ◆ 판매업자의 의무
-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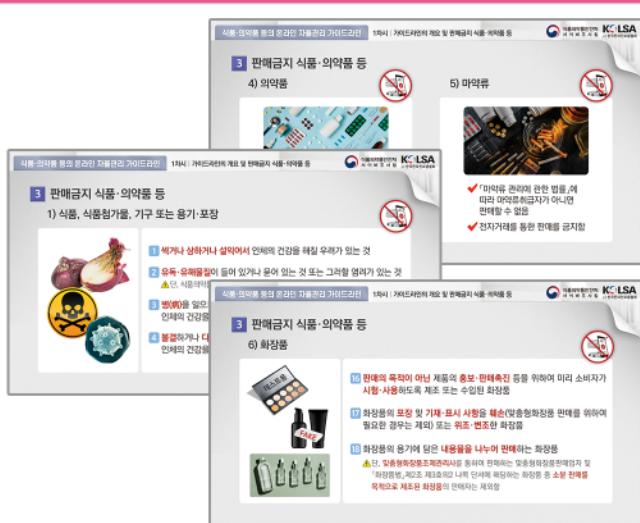
내용

- 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제품 거래에 도움을 제공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원

3 판매금지 식품·의약품 등

주제

-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 2) 축산물
- 3) 건강기능식품
- 4) 의약품
- 5) 마약류
- 6) 화장품
- 7) 의약외품
- 8) 의료기기



내용

- 각 품목의 온라인 판매금지 사항을 관련 법령과 함께 세부적으로 안내

2차시 판매업자·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1 판매업자의 자율관리

주 1) 모니터링

2)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해야 할 사항 안내
 - 정부 운영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정보 공유
 - 판매 품목의 검색 키워드 등록 시 사용하면 안 되는 질병 및 의약품 명칭 안내

2 |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관리

주 1) 모니터링

2)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사항

-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 등의 정보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할 사항을 사례와 함께 안내
 - 법령 위반 사항 확인 시 조치 사항을 절차적으로 안내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3차시 식품·의약품 등의 정보 등록 및 일반적 부당광고 금지

1

식품·의약품 등의 정보 등록

주제

1) 식품·의약품 등의 정보 등록 의무

2) 품목별 등록할 정보

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등의 품목 정보와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표시, 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함 안내
-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해 다음의 10가지 품목을 판매할 경우 등록해야 할 정보 안내
 - 식품(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주방용품, 기구 또는 용기,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의 판매

The screenshots show the following sections:

- 1) 식품·의약품 등의 정보 등록**
- 2) 품목별 등록할 정보**
- 3) 주방용품**

Each section contains detailed information and icons related to the respective product categories.

2

일반적 부당광고 금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위 소관 법률)

주제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부당광고 금지 사항에 대해 안내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란 어떠한 광고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

The screenshots show the following sections:

- 1) 일반적 부당광고 금지**
- 2) 일반적 부당광고 금지**
- 3) 일반적 부당광고 금지**

Each section provides examples and definitions of the types of misleading or unfair advertising practices.

4차시 품목별 부당광고 | (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1 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8)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9) 다른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10)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주제

내용

- 품목별 부당광고 중 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부당광고에 대하여 안내하며, 실제 위반 사례를 제시하여 안내



The screenshots show various sections of the guide, each highlighting a different type of misleading claim:

- Section 1: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Section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Section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Section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 Section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 Section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 Section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 Section 8: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 Section 9: 다른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Section 10: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5차시 품목별 부당광고 II (화장품 및 의약외품)

1 화장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주제**
- 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 2)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 내용**
- 화장품의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 및 수단이 무엇인지 안내
 -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해야 할 금지 사항에 대해 안내하며, 실제 위반 사례를 제시

2 의약외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주제**
- 1) 의약외품 표시·광고 시 공통사항
 - 2) 의약외품에 대한 부당광고

- 내용**
- 의약외품을 표시·광고할 때의 공통 적용 사항 안내
 - 의약외품의 부당광고 사항은 무엇인지 안내하며, 실제 위반 사례를 제시



6차시 품목별 부당광고 III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1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사항은 무엇인지 상세 안내

The left screenshot shows a general guide for online self-regulation, with a callout for '품목별 부당광고' (Misleading product advertising) which includes:

- 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
- 화장품 및 의약외품
-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The right screenshot is titled '1 의료기기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Misleading practices in medical device advertising) and lists three types of misleading claims:

-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 의료기기의 제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기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

2 위생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3) 다른 업소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의 상세 안내
- 표시·광고의 모든 매체와 수단을 통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비방하는 표시 광고에 대한 금지 사항 안내

The left screenshot is titled '2 위생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Misleading practices in hygiene product advertising) and lists three types of misleading claims: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해당 위생용품의 명칭·원료·제조방법·성분·용도·품질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효과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The middle screenshot is also titled '2 위생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and lists three types of misleading claims: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다른 업소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The right screenshot is titled '소비자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Misleading practices that may mislead consumers) and provides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third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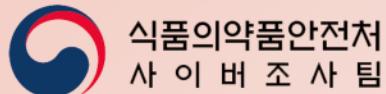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하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는 용기·포장, 라디오·텔레비전·신문·집·인터넷·영상·소셜미디어·간판·인터넷·그 밖의 방법으로 위생용품의 명칭·제조방법·품질·원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일리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제외하는 경우

-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법은 상장·보증· 또는 "특허"를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 인증·보증· 또는 "특허"를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

※ 본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또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해설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 자료 및 교육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의전화 043-719-1912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9 중앙빌딩 9층 11호
대표전화 : 02-784-4114
홈페이지 : <http://www.kolsa.or.kr>
온라인교육센터(수강료 무료) : <http://kolsa.sdulife.com>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온라인 판매금지 및 부당광고 관련
자율적 준수 사항과 역할 규정 안내

